



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

[시행 2022. 11. 23.] [조례 제3239호, 2022. 11. 23., 일부개정]

제주특별자치도(복지정책과), 064-710-287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 및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11.20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9.11.20.>

1. "외국인주민"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(이하 "제주자치도"라 한다)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,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.
2. "외국인주민 지원 단체"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3. 삭제 <2019.11.20.>

제3조(외국인주민의 지위)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<개정 2019.11.20.>

- 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개정 2019.11.20.>
[제목개정 2019.11.20.]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1.20.>

-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19.11.20.>
- ③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, 정책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11.20.>
-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·지원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관계 기관 및 부서간 협의 등을 총괄·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하거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.<신설 2019.11.20.>
[제목개정 2017.3.29.]

제4조의2(도민의 책무) 도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 및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외국인주민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11.20.]

제5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7.3.29., 2019.11.20.>

1. 외국인주민
2.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
3. 외국인주민단체

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5.11.4., 2019.11.20.>

1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사업
2. 고층·생활·법률·취업 등 상담사업
3.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사업
4. 문화·체육행사 사업
5.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사업
6.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
7.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
8.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
9. 자녀 보육 및 교육사업
10.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·의료 지원사업
11.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
12.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장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<개정 2019.11.20.>

제6조(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설치)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9.11.20.>

[제목개정 2019.11.20.]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9.11.20.>

1.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2.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
4.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에 관한 사항

- 5.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및 외국인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11.20.>
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개정2008. 5. 14, 2017.3.29., 2019.11.20.>

1. 당연직 위원(6명) :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관련 국장·경제관련 국장·보건복지여성관련 국장,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관련 실국장, 제주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, 법무부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 주무과장
2. 위촉직 위원(9명) :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, 관련 업무 및 전공의, 대학교수, 민간전문가, 시민·사회단체 대표,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, 외국인주민단체 대표,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대표, 그 밖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-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11.20.>

제9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9.11.20.>
 [전문개정 2015.11.4.]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2.11.23.>
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외국인주민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<개정 2019.11.20.>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외국인주민의 지원 활성화 <개정 2019.11.20.>

제15조(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)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9.11.20.>

[제목개정 2019.11.20.]

제16조(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세계인의 날) ① 도지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08. 5. 14, 2017.3.29., 2019.11.20.>

1. 기념식 및 문화·예술·체육행사
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3. 명예도민증 수여
4. 유공자 및 단체 포상
5.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08.5.14>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9.11.20.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08. 5. 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63호, 2015.11.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부칙 <제1835호,2017.3.29.>(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99호, 2019.11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.

부칙 <제3239호, 2022.11.23.> (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